



(제조물책임법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제조물책임법

글·김종호 세무사
김종호세무회계사무소

금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국내에서 발효됨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도 초기에는 다소 변화가 예상되며, 따라서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의 향후 계속적으로 발전적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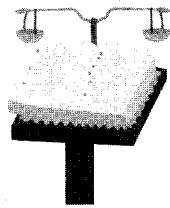
국내 안전인증제도의 기술기준은, 권장규격이기는 하나 국제규격인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규격을 모범으로 하여 3개년 연차계획으로 강제 규정화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는 국민의 건강,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로 저전압의 교류전로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하여 제정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전기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법이며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가법이다.

이러한 국내규격의 제정배경으로 하여, 기존의 민법 제5장(불법행위)의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서 다루어졌던 PL법안이 소비자의 권리

및 보호차원의 특별법으로 되었음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돌이켜 보면, 과거 소원해질 수 있었던 소비자의 권리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차원의 법으로 적극적으로 상향조정된 것은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를 위한 진일보된 발전적 방향선정일 것이다.

반면에 각 제조 및 판매회사들은 PL법의 제정과 운영에 따른 경제적이고 물질적 보상차원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임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기제품의 안전성결합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이미 시판 또는 판매된 제품을 recall 명령으로 회수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각종 부담증가가 제조업체나 회사들의 원가의 상승과 이미지추락은 물론 경영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무조건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을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PL사고로 인해 화재나 인명사고



가 발생되어 생산업체와 소비자 상호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는 소비자보호단체에서 recall압력을 행사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 것이다.

이때 최소한도의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안전인증승인서를 이용할 때만이 입증이 가능하며, 기타 제조업체에서 실시한 시험이나 평가 자료는 참조를 위한 보조적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즉 안전인증제도의 각종 안전규격시험은 실제 사용하는 조건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 시험의 종합평가인 관계로, PL법의 발전이나 강화되는 만큼 안전인증제도도 그와 버금가게 상향조정되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의 증거로 미국의 경우 1963년부터 PL법이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지만 이를 위한 UL이나 FCC 등 각종 규격은 일층 강화되어 운영되어 왔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규격을 만족치 못할 경우, 통관을 불허하는 것은 물론 시장에서의 판매를 허용치 않고 있다. 아니면 사고가 발생시 규격 비승인품이거나 규격 미달제품이 판명되면 무조건 보상은 물론이고 법정에서는 패소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한국의 전기·전자부품

류는 안전인증제도의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UL은 AC와 DC제품, 완제품과 부품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미 언급했듯이 AC제품만을 관리하고 있고, 또 완제품위주로 안전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배선기구류를 포함하여 약간의 핵심 부품을 안전인증대상으로 지정해 놓고 있으나, 그 숫자는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제한적이고 적다.

그래서 완제품에 대한 시험을 현행의 규격으로도 시행할 수 있으나, 제품의 내부에 채용되는 각종 부품류의 안전인증시스템은 극히 부실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시스템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여 상향조정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설비와 기술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 양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부품류를 포함한 고분자 재료들의 판정시험 법의 제정 및 적용이 안전하게 운용되어져야만이 안전사고 예방 차원의 최대한의 PL대비가 가능하다고 분석된다. 또 이렇게 되어야만 전기용품 안전인증의 국가간의 상호인증제도(MRA)도 가능할 것이며, 전기제품완제품은 물론 부품류들의 한국의 안전인증 취득후 세계의 다른 나라로 수출할 때 별도의 시험평가나 승인없이도 자유로이 수출이 가능할 것이다.